



• 2016. 11. 7.(월) • 총 1쪽(붙임 별도)

• **엠바고 없음**

홍보담당관실  
(T) 044-200-7071 ~ 7073, 7078  
(F) 044-200-7911

작성

**청탁금지제도과**

나성운 과 장 ☎ 044-200-7620  
정윤정 서기관 ☎ 044-200-7622  
박정구 사무관 ☎ 044-200-7621

**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 2차 회의 결과 발표**

**언론중재위원회 민간위원 법 적용대상**

-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/F는 11월 4일(금) 권익위, 법무부, 법제처, 기재부, 문체부, 인사처가 참여한 가운데 제2차 T/F회의를 개최하였다.
  - 이날 회의에서는 공무수행사인의 범위와 최근 입시철이 다가옴에 따라 입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질의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.
- ※ 붙임자료 참조
- 제3차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/F회의는 11. 11.(금) 개최되며, 외부강의등 사례금 관련 쟁점에 대한 해석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.

※ (붙임)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TF 회의(제2회) 결과

< 붙임 >

**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TF 회의(제2회) 결과**

**1 입시, 취업추천 관련 질의사항**

수능시험 떡 등 제공

선배 또는 선생님이 학생(후배)에게 수능시험을 잘 보라고 주는 떡 등이 허용되나요?

- 학생은 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.

학부모 단체의 간식 제공

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 단체가 수능을 앞두고 고3 학생들을 격려하고자 간식을 고3 학생 전원에게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나요?

- 학생은 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.

## □ 수능 격려 플래카드 부착

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 단체가 고3 학생들의 수능시험을 격려하기 위해 플래카드를 부착하는 것이 법 위반인가요?

-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가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.

## □ 대학 입시 설명회 시 식사제공

신입생 유치를 위한 대학 입시 설명회에 인근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및 선생님을 초청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나요?

- 학생은 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신입생 유치를 위한 대학 입시 설명회가 **공식적 행사**에 해당할 경우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는 허용됩니다. 다만,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**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**는 허용됩니다.

## □ 대학교수의 취업 추천

대학 교수가 민간기업에 제자에 대한 취업 추천을 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?

- 민간 기업 관계자는 **공직자등이 아니므로** 대학 교수가 민간기업에 제자에 대한 취업 추천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.

## 2

## 공무수행사인 관련

### □ 언론중재위원회 민간위원

언론중재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?

- 「**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**」에 따라 설치된 언론중재위원회는 심의·의결 등을 하기 위한 **합의제 기관**이므로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로 볼 수 있습니다. 또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등 **수행 업무의 성격이 공무**로 판단됩니다.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됩니다.

### □ 각종 협회

한국주택협회,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, 대한민국학술원 등 각종 협회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?

- 개별 법령에서 위 협회들에게 권한·업무를 위임·위탁하고 있으므로 위 협회들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됩니다.

## □ 평창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민간위원

평창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?

- 「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설치된 조직위원회는 그 **법적 성질이 합의제 기관이 아닌 법인**이므로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로 볼 수 없습니다. 따라서 평창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
### ※ 청탁금지법

제11조(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"공무수행사인"이라 한다)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.

1. 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